

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

의 안 번 호	1968
--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0. 2. 10.
제출자 : 안산시장

1. 제안사유

-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은 정부의 신 국민운동과 연계한 새마을 운동의 도약선언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분위기 쇄신이 신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작 인구 100만을 앞둔 우리시는 새마을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구심점이 없어 봉사실현을 위한 봉사자들의 역할이 미흡 할 뿐 아니라, 다문화 시대를 맞아 우리시의 여건상 결혼 이민자 주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안산 정착에 대한 적응교육이 필요한 실정임으로
-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2천여 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한 참봉사 실현을 위하여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(회장: 김태진)에서 이동 652번지에 사업비 2실 4억 8천 8백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『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』를 신축하고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하며,
- 주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은 일동 산 24번지 일원의 야산은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구룡마을과 안골마을을 가로막고 있어 양 지역의 소통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타 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·복지시설과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로,
- 주민의 생활불편 및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 기하여,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·복지 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문화·복지 욕구 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국유지와 사유지 총9필지 54,785㎡를 25억원에 매입하고 함.

2. 주요내용

1)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

- 가. 물건의 표시 :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2 (747.3 m²)
- 나. 기 부 자 : 사) 안산시 새마을회 (회장 김태진)
- 다. 목 적 : 새마을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회관의 부재와 다문화 시대를 맞아 결혼 이민자 주부의 한국 적응 등 참 봉사 실현을 위하여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건립
- 라. 건축 규모 : 996.99m²(지하1층 지상4층)
- 마. 사업 비 : 2,489백만원(새마을 단체부담 2,489백만원)
- 건립비 : 2,489,155,024원 (자체 재원 조달)

구 분	산 출 기 초	금액(원)
총 계		2,489,155,024
시설비	공사비 996.99m ² *2,200,000원	2,193,378,000
	설계용역비 공사비*4.52%	99,140,686
	(부가세) 설계용역비*10%	9,914,069
감리비	공사 감리비 공사비*1.13%	24,785,171
	(부가세) 공사감리비*10%	2,478,517
기타	시설부대비 공사비*0.27%	5,922,121
	예비비 공사비*7%	153,536,460

※ 토지가격 별도 : 813천원/m² × 747.3m² = 607,554,900원(공시지가)

1) 공사비

-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단위면적당 평균공사비 : 2,200,000원/m²

2) 설계용역비 등 요율

- 적용근거 「2009년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」

- 설계용역비 : 건축설계대가기준 제2종(보통)
- 공사감리비 :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제2종(보통)
- 시설부대비 : 건설부문 요율

바. 건축개요

구 분	면적(㎡)	용 도	비고
지하 1층	129.32	조리실(이주여성음식체험 교육, 김장 등)	
지상 1층	183.4	공공복리시설	
지상 2층	228.09	사무국, 회장단실, 소회의실, 봉사대사무실	
지상 3층	228.09	대회의실(교육실), 새마을역사관	
지상 4층	228.09	마을문고 및 사무실	
합 계	996.99		1,000 m ² 미만



사. 사업내용 : 안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설계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여 교육문화센터를 건립 후 기부채납

아. 공사기간 : 2010년 ~

자. 기타사항

- 사단법인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건축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
- 무상 사용기간은 기부자의 부담액만 해당됨.
⇒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· 처분기준(행정안전부 2009. 8월)

2) 주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

- 위치 : 상록구 일동 산24-19번지 일원(토지조사 별첨)
- 조성면적 : A = 71,589m² (21,656평)

학 교	체육시설	사회복지시설	주차장	도로
25,263 m ²	15,770 m ²	15,500 m ²	10,539 m ²	4,517m ² (폭 6~10m)

※ 국유지 4필지(5,874m²), 안산시 17필지(16,804m²), 사유지5필지(48,911m²)

- 소요 예산 : 2,500백만원

- 산출 내역

구 분	산 출 기 초	금 액(원)
총 계		2,500,000,000
토지 보상비	• 9필지 54,785m ² × 45,500원 - 국유지 4필지(5,874m ²), 사유지5필지(48,911m ²) - 필지별 감정가격을 고려하여 평균 보상가 적용	2,500,000,000

3. 주관부서 의견

-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 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·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가 시기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난하였으며,
- 경기도 내 27개 시·군에서 새마을 관련 시설물을 보유하고 참 봉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,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우리시는 봉사 거점이 없으므로 새마을교육문화센터가 필요한 실정에 있고,
- 다수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다문화 도시를 표방하고 있어 새마을교육을 통한 이주민의 내 고향 안산인 만들기가 필요한 실정이므로,

- 안산시 새마을회에서 동 건물을 건립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의거 안산시 새마을회에 무상 사용도록 함으로써 봉사의 패러다임에 적응하고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통합과 시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- 일동 복지센터 조성사업은 일동 산24번지 일원의 야산은 구룡마을과 안골마을을 가로막고 있어 양 지역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많은 피해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,
- 주민의 생활불편 및 낙후지역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문화복지 시설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문화복지 욕구 실현과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기 위하여 복지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함.

4.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: 불임

- 가.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(2-1)
- 나.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 취득 재산목록(2-2)

5. 단위사업 세부계획 : 불임

- 가. 새마을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 의향서, 건립위치도 등
- 나. 주민복지타운 요구에 따른 계획서

6. 관계법령 발췌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(기부채납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 편입할 재산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
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(공유재산심의회)

-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.
- ② 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○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5조(기부채납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.
 1. 기부할 물건의 표시
 2. 기부자의 명칭·성명(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) 및 주소
 3. 기부의 목적
 4. 기부할 물건의 가격
 5. 기부할 물건의 도면
- ② 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각 기부자의 성명·주소 및 기부재산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기부자가 법 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재산의 사용기간 중 당해 기부재산을 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부서에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.
- ④ 법 제7조제2항에서 "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"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<신설 2006.12.30>
 1. 무상사용·수익허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사용이 곤란한 경우
 2.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
 3. 무상사용·수익허가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
 4.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
○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

- ① 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에서

심의 할 사항은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
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(2-1)

(단위 : 필지수, 천원).

구 분			기 의 결			금번상정			합 계			비고
	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 지 건 물				1	9	2,500,000	1	9	2,500,000	
	1. 매 입	토 지 건 물				1	1	2,489,155	1	1	2,489,155	
	2. 교환으로 취 득	토 지										
	3. 기 타 취 득	건 물 공작물				1	1	2,489,155	1	1	2,489,155	기부 채납
처 분	계	건 물 토 지 공작물										
	4. 매 각	건 물 토 지										
	5. 멸 실	건 물										
	6. 양 여	토 지 건 물 공작물										
사용 및 대부허가		건 물										

2010년도 취득·처분대상 재산목록(2-2)

□ 취득재산

(단위 : 필지수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 가 정 액	취 득 시 기	취 사 득 유	취득대상 소유자	비고
	자목	소재지	수량					
1	건물	이동 652번지 (안산시 새마을교육 문화센터 기부채납)	1	2,489,155	10.12.	새마을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참봉사 실현	안산시	자치 행정과
2	토지	일동 산24-19 외8 (주민복지타운 조성 을 위한 토지매입)	9	2,500,000	10.06.	도시균형발전과 문화 복지 욕구실현 및 공동체의식 향상	안산시	미래 도시과

□ 처분재산

(단위 : 필지수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표시			추정 가액	처분 시기	처분사유	처분대상 소유자	비고
	자목	소재지	수량					
		해	당		없	음.		

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1968
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0. 3. 12.

발의자 : 박선희 의원외 5인

□ 수정이유

- 자금 출현 계획서, 부지의 타당성, 건물의 규모, 주차시설 및 임지조건, 대체부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 삭제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2. 주요내용 취득재산 중 “(2건)”을 “(1건)으로 수정하고,
 - 1)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의 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함

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2. 주요내용 중 “취득재산(2건)” 취득재산(1건)“으로 하고,
 - 1) 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을 삭제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2. 주요내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취득재산(2건)</u></p> <p>1) <u>안산시 새마을 교육문화센터 기부채납</u></p> <p>가. 물건의 표시 : 안산시 상록구 이동 652 (747.3 m²)</p> <p>나. 기 부 자 : 사) 안산시 새마을회 (회장 김태진)</p> <p>다. 목 적 : 새마을 운동의 근간을 이루는 회관의 부재와 다문화 시대를 맞아 결혼 이민자 주부의 한국 적응 등 참봉사 설현을 위하여 안산시 새마을 교육 문화센터 건립</p> <p>라. 건 축 규 모 : 996.99m²(지하1층 지상4층)</p> <p>마. 사 업 비 : 2,489백만원(새마을 단체부담 2,489백만원)</p>	<p>2. 주요내용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<u>취득재산(1건)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 삭제 ></u></p>
<p>2) 주민복지타운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</p>	<p>2) (원안과 같음)</p>